

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

(BK21사업팀, '23.2.27.)

1 추진 배경

-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('23.1.20.)에 따른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필요
 -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 일괄 인상(+30만 원)
 -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지역대학 4개교 추가 지원(10교 → 14교)
 -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BK21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참여 지원
- 대학원 혁신지원비 비목 간 집행비율 제한에 따른 활용 어려움 발생
-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TA(Teaching Assistant) 선발 제한에 따른 우수 TA 확보 차질 발생
- 상위법 등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조정 필요
-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이관(교육부 → 재단)에 따른 근거 규정 필요
-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훈령 폐지(타법폐지)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필요

2 개정 사항

연번	구분	주요 내용
①	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	학위과정별 연구장학금 단가 변경
		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비율 변경
②	대학원 혁신지원비 기준 변경	지역 대학 추가 선정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
③	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참여 지원	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BK21 교육 및 연구 참여 지원
④	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비율 조정	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비율 완화
⑤	TA 지원	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TA 지원 가능
⑥	이의제기 기간 조정	상위법 등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조정
⑦	사업총괄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	사업총괄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
⑧	훈령 관련 문구 수정	훈령 폐지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

3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

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

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금액 조정

○ (관련 규정)

- (지침) 제13조, 제30조, 【별표 3】 및 【별표 4】

- (집행기준) 제14조

○ (개정사유)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*(+30만 원)에 따른 금액 변경 필요

* (석사생) 월 70만 원→월 100만 원, (박사생) 월 130만 원→월 160만 원,
(박사수료생) 월 100만 원→월 130만 원

○ (개정방향)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< 지침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 제13조 (지원 대학원생)	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 통합과정생 : <u>월 70만 원 이상</u>	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 통합과정생 : <u>월 100만 원 이상</u>
	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<u>월 130만 원 이상</u>	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<u>월 160만 원 이상</u>
	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<u>월 100만 원 이상</u>	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<u>월 130만 원 이상</u>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비율 조정

○ (관련 규정) 지침 **【별표 3】**

○ (개정사유)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에 따른 항목별 비율 변경 필요

○ (조정원칙) 장학금 평균 증가율 32%*를 반영하고, 사업비 중 연구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(유형별 50% 또는 60%)을 반영하여 지침 상 명시된 세부 분야별 예산 편성 기준 상향 조정

* (석사생) 월 70만 원→월 100만 원(43%↑), (박사생) 월 130만 원→월 160만 원(23%↑), (박사수료생) 월 100만 원→월 130만 원(30%↑) ⇨ **평균 32% 증가**

< 세부 분야별 예산 편성 기준 조정 예시 >

(단위 : %)

구분		기존(지침) (A)	수정비율 (B=A×X*)	조정계수 (Y**)	조정비율 (C=B×Y)	최종 조정(안)
미래인재 양성사업	기초과학/ 응용과학/ 중점응용	60	79.2	0.839	66.4	65
	의·치· 한의학분야	50	66	0.862	56.9	55

* $X=1+\text{장학금 평균 증가율}(32\%)$

** $Y=100/\{100+(\text{장학금 비율}(50\% \text{ 또는 } 60\%)\times\text{장학금 평균 증가율}(32\%))\}\times 100$

○ (개정방향)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에 맞춘 예산 편성 기준 비율 조정

< 지침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 【별표 3】 (사업비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)	미래인재 양성사업 - 기초과학/응용과학/중점응용: 60% 이상 ※ 의·치·한의학분야 50% 이상 - 인문사회: 50% 이상 - 교육연구팀: 50% 이상	미래인재 양성사업 - 기초과학/응용과학/중점응용: 65% 이상 ※ 의·치·한의학분야 55% 이상 - 인문사회: 55% 이상 - 교육연구팀: 55% 이상
	혁신인재 양성사업 - 신산업 분야: 60% 이상 - 산업·사회문제 해결 분야 50% 이상	혁신인재 양성사업 - 신산업 분야: 65% 이상 - 산업·사회문제 해결 분야 55% 이상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② 대학원 혁신지원비 기준 변경

- (관련 규정) 지침 제42조
- (개정사유) 교육연구단 4개 이상 지역 대학 추가 선정*에 따른 대학원 혁신지원비 기준 변경 필요

* (기존) 교육연구단 5개 이상 → (수정 기본계획) 교육연구단 4개 이상의 지역 대학 추가 선정

<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('23.1.) >

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

- 일정 수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 중, 교육연구단 수, 참여교수 및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 규모 결정
 - (1차산정) 교육연구단 5개 이상* 선정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단 수에 따라 지원
- * 고특회계 증액에 따른 지역대학원 4개교 추가 선정('23)은 '23년 기준 교육연구단 4개 이상의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함

- (개정방향) 추가 선정 대학에 대한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근거 마련

< 지침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 제42조 (대학원 혁신 지원비 교부)	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 (교육연구팀 및 대학 간 연합 교육 연구단 제외)이 5개 이상 소속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하며, 교비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 단,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	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 (교육연구팀 및 대학 간 연합 교육 연구단 제외)이 일정 수 이상 소속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하며, 교비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 단,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③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프로그램 참여 지원

- (관련 규정)
 - (지침) 제48조 및 **【별표 5】**
 - (집행기준) 제29조
- (개정사유)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이 BK21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·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
- (개정방향)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소정의 장학금 지급

<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						
지침 제48조 (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	⑤ 우수 인재 유치, 사회적 배려자, 리더십 우수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 장학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편성 금액의 50%를 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.	⑤ 우수 인재 유치, 사회적 배려자, 리더십 우수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, <u>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</u> 장학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편성 금액의 50%를 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.						
지침 【별표 5】 (대학원 혁신 지원비 예산편성 비중)	<신설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행 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td>•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</td> <td>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집행 기준	비고	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•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	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
구분	집행 기준	비고						
3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•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	- 4학년 1학기생에 한해 지원 가능						
집행기준 제29조 (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	<신설>	⑦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4학년 1학기생으로 한정한다.						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4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비율 조정

- (관련 규정) 지침 제49조 및 【별표 5】
- (개정사유)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에 대한 대학원 자율성 확대 필요
- (개정방향)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비율 완화를 통한 대학원 자율성 확대

< 지침 개정 전 · 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침 제49조 (교육연구 환경 개선비)	② 대학원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의 안전·환경 개선 및 교육 및 연구·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,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20% 이내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.	② 대학원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의 안전·환경 개선 및 교육 및 연구·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, 별표 5의 편성 비중 이내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침 【별표 5】 (대학원 혁신 지원비 예산편성 비중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편성 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건비</td> <td>2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2. 국제화 경비</td> <td rowspan="2">6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/tr> <tr> <td>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</td> <td>2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6. 기타 사업 운영비</td> <td>5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편성 비중	1. 인건비	20% 이내	2. 국제화 경비	60% 이상	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20% 이내	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-	6. 기타 사업 운영비	5% 이내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편성 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건비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2. 국제화 경비</td> <td rowspan="2">②</td> </tr> <tr> <td>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/tr> <tr> <td>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</td> <td rowspan="2">①</td> </tr> <tr> <td>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</td> </tr> <tr> <td>6. 기타 사업 운영비</td> <td>5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①: 인건비+교육·연구환경 개선비 (시설비)+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 합 50% 이내 ② 국제화 경비+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합 50% 이상</p>	구분	편성 비중	1. 인건비	①	2. 국제화 경비	②	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①	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6. 기타 사업 운영비	5% 이내
구분	편성 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인건비	2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국제화 경비	6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
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2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-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기타 사업 운영비	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편성 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인건비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국제화 경비	②																										
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
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기타 사업 운영비	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5 TA 지원

- (관련 규정) 집행기준 제29조
- (개정사유) 교육연구단(팀)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TA로 선발 불가하기 때문에 우수한 TA 확보에 차질 발생
- (개정방향)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우수한 대학원생이 TA로 참여하여 대학원 교육·연구 역량 향상

<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집행 기준 제29조 (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	① 대학원 본부 차원의 대학원생 RA/TA 제도 운영에 따른 RA/TA 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다. (중략) 다만,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불가하다.	① 대학원 본부 차원의 대학원생 RA/TA 제도 운영에 따른 RA/TA 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다. (중략)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<u>지원 불가하나, TA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(지침 제11조 제7항의 강의를 포함한다)에서 지원 가능하다.</u>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⑥ 이의제기 기간 조정

- (관련 규정) 지침 제24조
- (개정사유) 상위법 등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조정 필요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)
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**20일**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(선정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)

⑥ 대학 또는 사업단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**10일**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.

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(이의제기)

①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연차평가·단계평가·종합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**10일**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- (개정방향) 이의제기 기간 조정을 통하여 상위법 등과의 기준 통일

< 지침 개정 전 · 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 제24조 (이의제기)	<p>① 지원 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로 한다. 또한, 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조정,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</p>	<p>① 지원 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 또한, 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조정,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</p>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⑦ 사업총괄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

- (관련 규정) 지침 제1조의2(신설)
- (개정사유)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이관(교육부→재단)에 따른 근거 규정 필요
- (개정방향) 지침 내 사업총괄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및 기능 명시

< 지침 개정 전 · 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 제1조의2 (사업총괄관리위원회)	<신설>	<p>① <u>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</u></p> <p>1. <u>선정평가, 수시 점검, 연차점검, 연차평가, 중간평가, 종합평가의 수행에 관한 심의</u></p> <p>2. <u>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및 평가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사업의 평가·관리 및 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</u>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	③ <u>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총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⑧ 훈령 관련 문구 수정

- (관련 규정) 집행기준 제9조, 제14조, 제19조 및 제22조
- (개정사유)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및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에 따른 훈령 관련 문구 수정
- (개정방향) 지침 및 집행기준 근거를 명확화하여 해석 상 혼란 해소

<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집행 기준 제9조 (사업비 편성원칙)	사업비는 <u>훈령</u> ·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.	사업비는 <u>기본계획</u> ·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.
집행 기준 제14조 (대학원생 연구 장학금)	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, <u>동 사업 훈령 제29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을</u> 준수하여야 한다.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(참여 대학원생 등) ⑧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「학술진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	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, 「 <u>학술진흥법</u> 」에서 정하고 있는 <u>관련 기준을</u> 준수하여야 한다.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붙임

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	<p>제1조의2(사업총괄관리위원회) <신설></p>	<p>제1조의2(사업총괄관리위원회) ① <u>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② <u>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</u> 1. <u>선정평가, 수시 점검, 연차점검, 연차평가, 중간평가, 종합평가의 수행에 관한 심의</u> 2. <u>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및 평가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</u> 3. <u>그 밖에 사업의 평가·관리 및 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</u> ③ <u>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
	<p>제13조(지원대학원생) ① <생략>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<u>70만 원</u> 이상 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<u>130만 원</u> 이상</p>	<p>제13조(지원대학원생) ① <현행과 같음>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<u>100만 원</u> 이상 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<u>160만 원</u> 이상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<u>100만 원</u> 이상 ③~④ <생략>	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<u>130만 원</u> 이상 ③~④ <현행과 같음>
	제24조(이의제기) ① 지원 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<u>7일</u>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<u>30일</u> 이내로 한다. 또한, 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조정,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 ② <생략>	제24조(이의제기) ① 지원 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<u>10일</u>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<u>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</u> 이내로 한다. 또한, 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조정,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 ② <현행과 같음>
	제30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 ① <생략>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<u>70만 원</u> , 박사 월 <u>130만 원</u> , 박사수료 월 <u>100만 원</u> 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, 교육연구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③~⑤ <생략>	제30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 ① <현행과 같음>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<u>100만 원</u> , 박사 월 <u>160만 원</u> , 박사수료 월 <u>130만 원</u> 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, 교육연구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③~⑤ <현행과 같음>
	제42조(대학원 혁신지원비 교부)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(교육연구팀 및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 제외)이 <u>5개</u> 이상 소속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하며, 교비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 단,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 ② <생략>	제42조(대학원 혁신지원비 교부) 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(교육연구팀 및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 제외)이 <u>일정 수</u> 이상 소속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하며, 교비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 단,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 계좌로 교부한다. ② <현행과 같음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제48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 ①~④ <생략> ⑤ 우수 인재 유치, 사회적 배려자, 리더십 우수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 장학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편성 금액의 50%를 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. ⑥~⑦ <생략></p>	<p>제48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 ①~④ <현행과 같음> ⑤ 우수 인재 유치, 사회적 배려자, 리더십 우수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,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장학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편성 금액의 50%를 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. ⑥~⑦ <현행과 같음></p>
	<p>제49조(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) ① <생략> ② 대학원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의 안전·환경 개선 및 교육 및 연구·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, 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20% 이내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. ③~④ <생략></p>	<p>제49조(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) ① <생략> ② 대학원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의 안전·환경 개선 및 교육 및 연구·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, 별표 5의 편성 비중 이내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. ③~④ <생략></p>
	<p>【별표 3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1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래인재 양성사업 - 기초과학/응용과학/중점응용: 60% 이상 ※의·치·한의학 50% 이상 - 인문사회: 50% 이상 - 교육연구팀: 50% 이상 혁신인재 양성사업 - 신산업 분야: 60% 이상 - 산업·사회문제 해결 분야 50% 이상 사업비 편성내용: 석·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- 석사과정: 월 70만 원 이상 - 박사과정: 월 130만 원 이상 - 박사수료: 월 100만 원 이상 2.~8. <생략></p>	<p>【별표 3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1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래인재 양성사업 - 기초과학/응용과학/중점응용: 65% 이상 ※의·치·한의학 55% 이상 - 인문사회: 55% 이상 - 교육연구팀: 55% 이상 혁신인재 양성사업 - 신산업 분야: 65% 이상 - 산업·사회문제 해결 분야 55% 이상 사업비 편성내용: 석·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- 석사과정: 월 100만 원 이상 - 박사과정: 월 160만 원 이상 - 박사수료: 월 130만 원 이상 2.~8. <현행과 같음>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【별표 4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</p> <p>1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사과정생 월 <u>70만 원</u> 이상 • 박사과정생 월 <u>130만 원</u> 이상 • 박사수료생 월 <u>100만 원</u> 이상 <p>2.~8. <생략></p> <p>【별표 5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92 1010 842 1552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행 기준</th> <th>비고</th> <th>편성 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건비</td> <td rowspan="2"><생략></td> <td rowspan="2"><생략></td> <td>2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2. 국제화 경비</td> <td>6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td>2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</td> <td rowspan="3"><생략></td> <td rowspan="3"><생략></td> <td>—</td> </tr> <tr> <td>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</td> <td>5% 이내</td> </tr> <tr> <td>6. 기타 사업 운영비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1. 인건비	<생략>	<생략>	20% 이내	2. 국제화 경비	60% 이상	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신설>	<신설>	20% 이내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생략>	<생략>	—	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5% 이내	6. 기타 사업 운영비		<p>【별표 4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</p> <p>1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사과정생 월 <u>100만 원</u> 이상 • 박사과정생 월 <u>160만 원</u> 이상 • 박사수료생 월 <u>130만 원</u> 이상 <p>2.~8. <현행과 같음></p> <p>【별표 5】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74 786 1425 153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집행 기준</th> <th>비고</th> <th>편성 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건비</td> <td rowspan="2"><현행과 같음></td> <td rowspan="2"><현행과 같음>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2. 국제화 경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td>• BK21 사업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</td> <td>- 4학년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</td> <td>②</td> </tr> <tr> <td>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</td> <td rowspan="3"><현행과 같음></td> <td rowspan="3"><현행과 같음></td> <td>①</td> </tr> <tr> <td>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. 기타 사업 운영비</td> <td>5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①: 인건비+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+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 합 50% 이내</p> <p>②: 국제화 경비+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합 50% 이상</p>	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1. 인건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2. 국제화 경비		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• BK21 사업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	- 4학년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	②	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6. 기타 사업 운영비	5% 이내
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인건비	<생략>	<생략>	2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국제화 경비			6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<신설>	<신설>	2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생략>	<생략>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	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기타 사업 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집행 기준	비고	편성 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인건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국제화 경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• BK21 사업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 연계 과정 및 통합과정생 지원금	- 4학년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	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(시설비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기타 사업 운영비			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집행 기준	<p>제9조(사업비 편성 원칙)</p> <p>사업비는 훈령·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사업비 편성 원칙)</p> <p>사업비는 기본계획·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제 14조(대 학원생 연구장학금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 통합과정생 : 월 70만 원 이상</p> <p>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 원 이상</p> <p>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 원 이상</p> <p>③ <생략></p> <p>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, 동 사업 훈령 제29조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⑤~⑥ <생략></p>	<p>제 14조(대 학원생 연구장학금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 통합과정생 : 월 100만 원 이상</p> <p>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60만 원 이상</p> <p>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30만 원 이상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, 「학술진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⑤~⑥ <현행과 같음></p>
	<p>제 19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</p> <p>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% 또는 5천만 원(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% 이내)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 다만, 동 사업 훈령 및 지침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 19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</p> <p>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% 또는 5천만 원(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% 이내)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 다만, 동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제22조(사업비 편성 원칙)</p> <p>① 사업비는 훈령·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차원의 교육·연구 여건 개선, 제도 개선 등 대학원 본부의 대학원 제도 혁신 및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22조(사업비 편성 원칙)</p> <p>① 사업비는 기본계획·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차원의 교육·연구 여건 개선, 제도 개선 등 대학원 본부의 대학원 제도 혁신 및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	<p>제29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</p> <p>① 대학원 본부 차원의 대학원생 RA/TA 제도 운영에 따른 RA/TA 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다. BK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(부)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, BK21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또는 연구활동 등과 연관된 RA/TA 대학원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. 다만,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불가하다. RA/TA 지원비는 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개별 교원과의 계약이 아닌 대학본부차원에서 확립한 RA/TA 제도(지원기간, 지원액이 포함된 복무협약서 작성 등 대학 자체기준 마련)를 통해 서면협약을 체결한 인력에게 집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⑥ <생략></p>	<p>제29조(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</p> <p>① 대학원 본부 차원의 대학원생 RA/TA 제도 운영에 따른 RA/TA 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다. BK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(부)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, BK21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또는 연구활동 등과 연관된 RA/TA 대학원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.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불가하나, TA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(지침 제11조 제7항의 강의를 포함한다)에서 지원 가능하다. RA/TA 지원비는 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개별 교원과의 계약이 아닌 대학본부차원에서 확립한 RA/TA 제도(지원기간, 지원액이 포함된 복무협약서 작성 등 대학 자체기준 마련)를 통해 서면협약을 체결한 인력에게 집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⑥ <현행과 같음>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⑦ <신설></p>	<p>⑦ <u>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장학금은 지침 제48조 제5항에 편성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편성액의 30% 이하로 집행 가능하다. 이 때, 지원 대상은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4학년 1학기생으로 한정한다.</u></p>